

규 정 입 안 서

부 서 명	대외협력처	입안일자	2012.01.03
규 정 명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예산조치		관련부서	학생처, 교무처, 생활관
승인검토	<input type="checkbox"/> 부분 <input type="checkbox"/> 법인승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보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제·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우리대학의 세계적 수준 전문대학(WCC) 선정에 따라 2012년 신규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유학생을 초청하여 전액 장학금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관리규정”에 추가하여 규정상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②다만, 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의 경우 일부 조항에 있어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5조(입학자격)

⑤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는다.

제6조(언어능력기준)

③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기준을 완화하여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③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세부 실행지침에 의해 등록을 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변경후 규정전문 1부.

경 영 기 획 실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좌동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한다. <u>②다만, 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의 경우 일부 조항에 있어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u>
제4조 - 제5조 제③항 생략 <신 설>	제4조 - 제5조 제③항 좌동 <u>④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는다.</u>
제6조 제①항 - 제②항 생략 <신 설>	제6조 제①항 - 제②항 좌동 <u>③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한국어능력 기준을 완화하여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u>
제7조 제①항 - 제⑧항 생략 <신 설>	제7조 제①항 - 제⑧항 좌동 <u>⑨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세부 지침에 의해 별도의 입학구비서류를 갖는다.</u>
제8조 - 제10조 생략	제8조 - 제10조 좌동
제11조(등록금) 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류(교환)학생은 해당 협약(협정)에 의해 등록금을 납부한다.	제11조(등록금) ①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u>②교류(교환)학생은 해당 협약(협정)에 의해 등록금을 납부한다.</u> <u>③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세부 실행지침에 의해 등록을 필한다.</u>
부칙 생략 <신 설>	부칙 좌동 부 칙 <u>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u>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2011. 01. 25. 최초제정

2012. 01. 03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장에 의한 내국인 신입학 기준에 준하여 우리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학사관리를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유학생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본 규정은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한다.

②다만, 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의 경우 일부 조항에 있어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입학시기) 유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칙에 의거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입학 허가는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유학생의 입학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입학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학년 :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자국에서 12년 이상 학력 과정 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한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2. 학업계획서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 재정능력이 있는 자.

②학칙에 의하고, 한국어능력의 기준은 제6조에 의한다.

③교류(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 교류협약(협정)에 의한다.

④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는다.

제6조(언어능력기준) 유학생의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언어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②제반 법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탁생, 교환(교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등은 한국어능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조건에 의할 수 있다.

③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기준을 완화하여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제7조(입학구비서류) 유학생의 입학 시 갖추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정의 입학지원서..... 1부.

②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부.

④재정능력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금과 생활비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 은행잔고증명, 1개월 이상 계속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중 1가지.....1부.
2. 재정보증인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각 1부.

⑤친족관계 증명서(호구부 등)..... 1부.

⑥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원본대조)..... 각 1부.

⑦여권사본(원본대조)..... 1부.

⑧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청서류..... 1부.

⑨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세부 지침에 의해 별도의 입학구비서류를 갖는다.

제8조(구비서류제출) 입학 지원하는 유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교무처 입학과에 제출한다.

제9조(사정방법) 유학생의 입학사정은 내국인에 준하여 우리 대학 학칙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입학허가 및 절차) 유학생의 입학허가 및 절차는 내국인에 준하여 제22조(입학허가) 및 제23조(입학절차)의 과정을 거친 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의 사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이 완료된다.

제11조(등록금) ①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류(교환)학생은 해당 협약(협정)에 의해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개발도상국 초청 유학생은 세부 실행지침에 의해 등록을 필한다.

제12조(학사관리)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학칙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3조(학사관리 점검 및 조사)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매학기가 종료되면 교무처에서 직전학기의 유학생에 대한 출석 및 학점부여에 관해 자체 점검 및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유학생 관리 전담부서에도 통보한다.

제14조(수업연한과 교과)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교류(교환)학생의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①학사일정 등을 숙지(홍보)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②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③출석 및 수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전체 평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④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⑥졸업에 필요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⑦필요할 경우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강좌를 무학점 과정으로 개설하여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16조(성적이수) 유학생의 성적은 수업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기타 사정을 통과하였을 때에는 성적으로 이수·관리하며,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7조(장학관리) 유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장학규정에 의하며, 장학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한다.

①수강신청은 장학금 수혜에 결격이 되지 않도록 매학기 15학점 이상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②장학금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홍보하여 인식시킨다.

③출석,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사정을 통합 사정함을 지도한다.

④절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8조(입·출국지원) 유학생들의 입·출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예약과 국내의 이동차량 예약 및 비자의 신청·연장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일상생활관리지원) 유학생들의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지원한다.

①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경우 우선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②기숙사 이외의 주거공간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③주변 생활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④수업 및 생활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학과에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을 한다.

⑤주거지 및 휴대폰번호를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제20조(문화활동)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발전에 대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 문화탐방, 유학생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홈스테이를 최대한 알선한다.

제21조(취업지원 및 알선)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활의 도움이 되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유학생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 불법 취업을 방지한다.

제22조(보험가입) 유학생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23조(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유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또한 유학생의 미등록 및 체적, 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제24조(관계법 적용) 유학생의 관리의 관계법규의 준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교류협력(협정)을 준용한다.

②언어능력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제25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